

남원용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남원용성중학교운영위원회  
위 원 장

2018년 7월 12일

### 남원용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

남원용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7호 “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” 을 “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제9호 “대학입학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” 을 삭제하며, 같은조 제3항 중 “제1항제14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” 을 “제1항제1호·제5호·제8호·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제1호·제5호·제8호, 그 밖에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심의사항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·개정</li><li>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</li><li>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</li><li>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</li><li>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</li><li>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</li><li><u>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</u></li><li>학교급식에 대한 사항</li><li><u>대학입학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</u></li><li>학교 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</li><li>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</li><li>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</li><li>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·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</li><li>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</li><li>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</li><li>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</li><li>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, 임용, 평가 등에 관한 사항</li></ol> <p>② &lt;생략&gt;</p>	<p>제18조(심의사항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·개정</li><li>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</li><li>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</li><li>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</li><li>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</li><li>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교장의 공모방법, 임용, 평가 등에 관한 사항</li><li><u>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</u></li><li>학교급식에 대한 사항</li><li><u>삭제</u></li><li>학교 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</li><li>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</li><li>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</li><li>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·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</li><li>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</li><li>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</li><li>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</li><li>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, 임용, 평가 등에 관한 사항</li></ol> <p>②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제1항제14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&lt;생략&gt;</p>	<p>③ 제1항제1호·제5호·제8호·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④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④ 제1항제1호·제5호·제8호, 그 밖에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
<p>⑤ ~ ⑧ &lt;생략&gt;</p>	<p>⑤ ~ ⑧ &lt;현행과 같음&gt;</p>